

[별표 1]<개정 1992.9.7>

자동차운송질서준수사항(제2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 관련)

1. 신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
2. 차선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
3.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
4. 적정 속도를 유지하도록 할 것
5. 앞지르기 할 때의 준수사항을 꼭 실천하도록 할 것
6. 궤도, 건널목 통과시의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할 것
7. 정류소에서 주정차할 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
8.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난폭운전을 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
10.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할 것
11. 금지된 장소에서 회전·횡단·후진을 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
12.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할 것
13. 진로양보의무 사항을 준수하도록 할 것
14. 교차로 통행방법을 준수하도록 할 것
15. 정비불량차를 운행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
16. 취중 운전을 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
17. 주취 여부 측정에 응하도록 할 것
18. 과로시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
19. 위험 방지조치에 응하도록 할 것
20.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긴급 조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것
21.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신고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할 것
22.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·신분증 또는 자격증제시요구가 있을 때 불응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
23. 자동차를 이용한 범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
24. 지정된 장소에서 서행·일시정지를 준수하도록 할 것
25. 고속도로 통행방법을 준수하도록 할 것
26. 자동차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등으로 방향전환등 앞으로의 운행할 의사를 미리 신호하도록 하게 할 것
27. 고장 등의 경우 조치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할 것
28. 승차정원 및 적재적량(도로교통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중량 및 용량을 말한다)을 초과하여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
29. 승차거부·부당요금징수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미터기를 부착하게 하며 이를 부당하게 조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(일반택시·개인택시·용달화물운송사업에 한한다)
30. 호객행위·장기정차·합승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(일반택시·개인택시·용달화물운송사업에 한한다)
31. 여객이나 화물을 도중하차 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
32. 차체가 헐거나 망가진 상태로 운행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

33. 응급용 수리공구를 비치하고 운행하도록 할 것
34. 지정된 출발시간 및 도착시간을 지키도록 할 것(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한한다)
35. 정류소외의 장소에서 여객을 승차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(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한다)
36. 개문발차를 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
37. 임의로 결행하거나 단축 또는 연장운행등 인가된 운행계통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
38. 운전자격 요건을 구비한 자에 한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할 것